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영유아보육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최교진 (교육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기간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고, 자격 취소 후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(2019헌마813, 2022.9.29.)의 취지에 맞추어, 아동학대 범죄자의 어린이집 설치·운영의 결격 기간과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소 후 재교부 금지 기간 등을 정할 때 범죄의 종류, 형기의 장단 등을 고려하도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(법률 제21657호, 2026.5.19. 공포, 2026.11.20. 시행)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가.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어린이집 설치·운영의 결격 기간을 범죄의 종류, 형기의 장단 등을 고려하여 세분화(안 제20조의9 신설)
- 나.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자격이 취소된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재교부 금지 기간을 범죄의 종류, 형기의 장단 등을 고려 세분화(안 제25조의6 신설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7.30.~2026.9.8.)

3) 규제심사 대상

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의9부터 제20조의13까지를 각각 제20조의10부터 제20조의14까지로 하고, 제20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의9(아동학대관련범죄자의 어린이집 설치·운영 결격기간) ①
법 제16조제5호·제6호·제8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이란
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.

1.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
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

가.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: 15년

나. 1년 이상 2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: 17년

다.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: 20년

2.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
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: 집행유예기간 경과 후 10년

3.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
확정된 경우

가. 5백만 원 미만의 벌금형: 5년

나.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의 벌금형: 7년

다. 1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: 10년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학대관련범죄의 경우 각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.

1.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
죄 및 같은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

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
선고 받은 경우: 20년

나.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: 10년

2.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4호하목에 따른
아동학대살해·치사죄 및 아동에 대한 「형법」 제2편제24장
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: 20년

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9까지를 각각 제25조의7부터 제25조의10까지로 하고, 제2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5조의6(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
자격 재교부 금지 기간) ① 법 제48조제2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
정하는 기간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.

1.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

가.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: 15년

나. 1년 이상 2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: 17년

다.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: 20년

2.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: 집행유예기간 경과 후 10년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 제4호하목에 따른 아동학대살해·치사죄 및 아동에 대한 「형법」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의 경우 자격 재교부 금지기간을 20년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0조의9(아동학대관련범죄자의 어린이집 설치·운영 결격기간)</u> <u>① 법 제16조제5호·제6호·제8호 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”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.</u> 1.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 가.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: 15년 나. 1년 이상 2년 미만의 징역 이나 금고: 17년 다.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: 20년 2.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: 집행유예기간 경과 후 10년 3.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

가. 5백만 원 미만의 벌금형:

5년

나.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

미만의 벌금형: 7년

다. 1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:

10년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
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학대관련
범죄의 경우 각 호에서 정한 기간
으로 한다.

1.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
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4호바목에
따른 죄 및 같은 죄로서 다른
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
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
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
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:
20년

나.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:

10년

2.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
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4호하목에
따른 아동학대살해·치사죄
및 아동에 대한 「형법」 제2편
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
부터 제255조까지의 죄: 20년

제20조의9 ~ 제20조의13 (생략)

<신설>

제20조의10 ~ 제20조의14 (현행 제20조의9부터 제20조의13까지와 같음)

제25조의6(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 교사의 자격 재교부 금지 기간)

① 법 제48조제2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.

1.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

가.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: 15년

나. 1년 이상 2년 미만의 징역 이나 금고: 17년

다.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: 20년

2.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: 집행유예기간 경과 후 10년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아동

<u>제25조의6 ~ 제25조의9</u> (생략)	<u>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4호하목에 따른 아동학대살해·치사죄 및 아동에 대한 「형법」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의 경우 자격 재교부 금지기간을 20년으로 한다.</u> <u>제25조의7 ~ 제25조의10</u> (현행 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9까지와 같음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	
연 락 처	(044) 203 - 7168